

제284회  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# 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제 안 설 명 자 료



2018. 11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 경 부위원장님,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, 지금부터 『서울 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2019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, 고등학교 1개교의 위치를 이전하며,
- 존속기간이 만료된 2개교(원)를 폐지하고, 기 설치된 시립학교 39개교의 도로명주소를 정비 및 변경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-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와
- “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”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모절차로 선정된 관악구 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서울구암유치원으로 신설하고, 강서구 마곡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공항 고등학교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.
-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과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 병설유치원은 그 존속기한이 2015. 2.28.자로 설정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며,
-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9개교의 위치 정비는 2012년 도로명주소로의 일제정비 이후 신설 및 이전된 학교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, 중전 도로명주소로 표기된 위치 등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